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60
----------	-------

발의연월일 : 2025. 6. 30.

발 의 자 : 김태호 · 이인선 · 우재준
성일중 · 강명구 · 박정하
이상휘 · 조경태 · 박충권
고동진 · 신성범 · 정연욱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경우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15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되며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기부 활성화

를 통한 지방재정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58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만원”을 각각 “20만원”으로, “손금”을 “필요경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만원”을 각각 “20만원”으로,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를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를 “제3항의”로 한다.

3.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20만원 × 110분의 100 + 980만원 × 100분의 15 + (고향사랑 기부금 - 1천만원) × 100분의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

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times$ 110분의 100
2.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20만원 $\times$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times$ 100분의 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u>10만원</u>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u>10만원을</u>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급에 산입한다.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 ----- ----- ----- ----- ----- ----- ----- <u>20만원</u> ----- ----- <u>20만원</u> ----- ----- -----필요경비-----.
1. <u>10만원</u>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1. <u>20만원</u> ----- -----
2. <u>10만원</u> 초과 <u>2천만원</u>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u>10만원</u>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u>10만원</u>) × <u>100분의 15</u>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2. <u>20만원</u> ----- <u>1천만원</u> ----- ----- <u>20만원</u> ----- ----- <u>20만원</u> ----- ----- <u>-100분의 15</u>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
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
분의 30)

<신 설>

<신 설>

3.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20만
원 × 110분의 100 + 980만원
× 100분의 15 + (고향사랑
기부금 - 1천만원) × 100분
의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
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
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
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
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
자인 거주자의 경우 20만원 이
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20만원을 초과하는 금

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
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20만원
 $\times$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times$ 100분
의 30

[illegible]

④

제3항의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

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